

일본의 주요 도로 표지판



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하여 안전하며 즐거운 드라이브 여행을

도로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하며
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주의환기와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.
교통규칙을 무시하는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도 이어집니다.
교통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며 편안한 드라이브 여행을 하도록 합시다.

규제표지

<p>통행금지 모든 보행자 · 자동차 · 노면전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차량 통행금지 차(자동차 · 원동기장치자전거 · 경차)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.</p>
<p>주정차금지 자동차는 정차 · 주차할 수 없습니다. (위의 숫자는 금지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)</p>	<p>주차금지 자동차는 주차해서는 안됩니다. (위의 숫자는 금지 시간을 표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)</p>
<p>일시정지 자동차는 정지선 앞에서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. 정지선이 없을 때에는 교차로(표지) 바로 앞에서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.</p>	<p>서행 자동차는 서행 (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통행)해야만 합니다.</p>
<p>최고속도 자동차는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넘어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.</p>	<p>최저속도 자동차는 표시되어 있는 속도 미만의 속도로 통행해야 합니다.</p>
<p>차량 진입금지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. (일방 통행의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)</p>	<p>차량 횡단금지 자동차는 횡단하면 안됩니다. (도로 외 시설과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수반하는 횡단을 할 수 없습니다)</p>
<p>유턴금지 자동차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앞지르기금지 자동차(차량)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됩니다.</p>
<p>지정방향 외 진행 금지 자동차는 화살표 방향 이외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.</p>	
<p>일방통행 자동차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. 반대방향의 통행은 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전용통행차로 표지판에 표시되어있는 자동차의 전용통행차로 임을 가리킵니다. (이 경우에는 노선버스 등의 전용통행차로)</p>